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호-1063

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-74호(2021. 4. 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“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, 물건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,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 관련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보상대상 물건이 누락되어 있거나 면적, 수량, 구조, 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6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

다. 면 적 : 60,653㎡

라. 사업시행자 :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(조합장 김명산)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317, 2층(마천동)

2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기간 : 2026년 6월 4일 ~ 2026년 6월 19일(15일간)

나. 열람장소 : 조합사무실[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317, 2층(마천동),

02-403-0066] 송파구청 주택사업과[서울 송파구 올림픽로

326(신천동), 02-2147-2897]

다. 이의신청방법 : 열람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

3. 보상대상

가.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

나. 토지 및 물건조서 :

구 분	서울시 송파구 마천동
토 지	211-120, 320-19, 323-220
물건 등	해당사항 없음

4. 보상의 시기 : 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협의 통지 후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 보상

※ 감정평가실시 및 협의상황, 인허가절차 등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액 산정 : 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(시·

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,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)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.

나. 보상금 지급 : 보상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지급.

다. 감정평가업자 추천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.

라.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(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) → 보상금(현금)지급(수령 거부 또는 보상금에 대한 압류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공탁)

6. 기 타 사 항

가.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, 주소불명·거소불명·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함.

나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음.

다.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,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.

라. 미분할 필지는 추후 현황측량 후에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이 있을 시

추후 개별 통지함.

- 마.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추후 개별 통지함.
- 바.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(잔여지)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.
- 사. 보상절차, 조서열람, 감정평가사추천, 이의신청 등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(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화 02-403-0066).
- 아.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(상속인 포함)는 보상절차 기간 동안 상속등기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. 이 공고문을 수령하신 토지등소유자(상속인 포함)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에 날인하신 후 조합사무실로 우편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램 의 전 서

사 업 명	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		
공람기간	2026년 6월 4일 ~ 2026년 6월 19일(15일간)		
공람전명	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		
의견제출자 인적사항	성 명		
	물건지 지번		
	주 소		
	연락처		
공 램 의 전			
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 거 공람공고한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(안)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의견제출자: (서명)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			